

# 변경대비표

## [신탁계약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**NH-Amundi 1.5 배 레버리지 인덱스 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**
2. 효력발생일 : 2017 년 8 월 21 일
3. 주요정정사유;
  - 클래스 가입자격 추가(Cw Class)
  - Ce 클래스 판매 보수인하(1000 분의 7.55→1000 분의 5)
  - 선취판매수수료 차등적용('~이내 문구 추가')
  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)
  - 투자대상자산 신용평가등급 관련 내용 보완
  - 자구정정

## 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)	①~② (생략)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Class Cw: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	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Class Cw: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,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,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(생략) 2. 법제 4 조제 3 항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BBB+ 이상이어야 한다),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2- 이상인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- 이상인 것) 및 그 밖에 이와 유사(유사)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. (이하 "채무증권"이라 한다)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(현행과 같음) 2. 법제 4 조제 3 항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+ 이상이어야 한다),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- 이상인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취득 시 신용등급이 A2- 이상인 것) 및 그 밖에 이와 유사(유사)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. (이하 "채

	(이하 생략)	<b>무증권</b> 이라 한다 (현행과 같음)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<신설>	④ <u>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 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</u>
제23조(운용해위 감시 의무 등)	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, 1.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. 법 제88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.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4.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	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 1.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. 법 제88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. <u>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</u> 4.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.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 6. <u>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등</u> 7. <u>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
제26조(환매업무)	①~⑥ (생략) ⑦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u>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</u>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	①~⑥ (현행과 같음) ⑦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u>관련세금</u>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
제33조(이익분배)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별</u>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② (현행과 동일)

	<p>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'0'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>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p> <p>2.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</p>
제39조(보수)	<p>Class Ce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(5.6)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(7.55)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(0.3)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(0.15)</p>	<p>Class Ce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(5.6)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(5)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(0.3)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(0.15)</p>
제40조(판매수수료)	<p>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1. Class A : 선취판매수수료로서 납입금액의 1%</p> <p>2. Class C : 해당사항 없음</p> <p>3. Class Ce : 해당사항 없음</p> <p>4. Class Ci : 해당사항 없음</p> <p>5. Class Cw : 해당사항 없음</p> <p>6. Class S : 해당사항 없음</p> <p>7. Class Ci-2: 해당사항 없음</p> <p>8. Class Ae : 선취판매수수료로서 납입금액의 0.5%</p>	<p>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1. Class A : 선취판매수수료로서 납입금액의 1%이내</p> <p>2. Class C : 해당사항 없음</p> <p>3. Class Ce : 해당사항 없음</p> <p>4. Class Ci : 해당사항 없음</p> <p>5. Class Cw : 해당사항 없음</p> <p>6. Class S : 해당사항 없음</p> <p>7. Class Ci-2: 해당사항 없음</p> <p>8. Class Ae : 선취판매수수료로서 납입금액의 0.5%이내</p>
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	<p>④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④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 &lt;삭제&gt;</p>
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③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4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	<삭제>
제 50 조(신탁재산에 관한 보고 등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 90 조제 1 항의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④ 협회는 법시행령 제 9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투자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<u>제 94 조제 1 항</u>의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④ 협회는 법시행령 <u>제 94 조제 2 항</u>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투자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</p>
제 52 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 <u>저축</u> 약관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.
부칙	-	<b>(변경시행일)</b> 이 신탁계약은 2017년 8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

# 변경대비표

## [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**NH-Amundi 1.5 배 레버리지 인덱스 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**
2. 효력발생일 : 2017년 8월 21일
3. 주요정정사유;
  - 클래스 가입자격 추가(Cw Class)
  - Ce 클래스 판매 보수인하(0.755%→0.5%)
  - 선취판매수수료 차등적용('~이내 문구 추가')
  - 변동성(표준편차) 변경사항 반영(19.01% → 17.86%, 1 등급 유지)
  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)
  - 투자대상자산 신용평가등급 관련 내용 보완
 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
  - 자구정정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[요약정보] 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[가입자격] Class Cw: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 [판매수수료] Class A : 납입금액의1% Class Ae : 납입금액의 0.5%  [판매보수] Class Ce : 0.755(연, %)  [기타비용, 총보수비용]	[가입자격] Class Cw: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, <u>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                     운용하는 신탁업자, 보험업법 제108조의                     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</u>  [판매수수료] Class A: 납입금액의 <u>1%이내</u> Class Ae : 납입금액의 <u>0.5%이내</u>  [판매보수] Class Ce : <u>0.50</u> (연, %)  [기타비용, 총보수비용]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
[요약정보] 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. 운용전문인력 4. 투자실적추이	-	작성기준일 기준 업데이트
[요약정보] III. 1.과세	<신설>	- <u>이 투자신탁은 2017년 8월 21일 이후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</u>

		<p>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. 따라서 투자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연도에 과세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
<p>제1부. 제2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p> <p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p>	<p>(2) 종류형 구조 &lt;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&gt; [가입자격] Class Cw: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</p> <p>&lt;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&gt; [선취판매수수료] Class A : 납입금액의 1% Class Ae : 납입금액의 0.5%</p> <p>[판매보수] Class Ce : 0.755(연간, %)</p>	<p>(2) 종류형 구조 &lt;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&gt; [가입자격] Class Cw: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,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,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</p> <p>&lt;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&gt; [선취판매수수료] Class A : 납입금액의 1%<u>이내</u> Class Ae : 납입금액의 0.5%<u>이내</u></p> <p>[판매보수] Class Ce : 0.500(연간, %)</p>
<p>제 2 부. 10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	<p>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 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19.01%로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부여 시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합니다. 다만, 동 펀드는 레버리지 펀드로 수익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1 등급에 해당되는 '매우 높은 위험'으로 부여하였습니다.</p>	<p>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 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17.86%로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부여 시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합니다. 다만, 동 펀드는 레버리지 펀드로 수익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1 등급에 해당되는 '매우 높은 위험'으로 부여하였습니다.</p>
<p>제 2 부.11. (4)종류별 모집제한</p>	<p>가입자격 Class Cw: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</p>	<p>가입자격 Class Cw: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,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,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</p>
<p>제 2 부.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부과되는 수수료 [선취판매수수료]</p>	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부과되는 수수료 [선취판매수수료]</p>

	<p>Class A: 납입금액의 1% Class Ae: 납입금액의 0.5%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[보수] Class Ce : 판매회사(0.755%)</p> <p>&lt;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&gt;</p>	<p>Class A: 납입금액의 1%<u>이내</u> Class Ae: 납입금액의 0.5%<u>이내</u>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[보수] Class Ce : <u>판매회사(0.50%)</u>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</p> <p>&lt;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&gt;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</p>
<p>제2부.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	<p>가. 이익 배분 (1)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(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)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가. 이익 배분 (1) <u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(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)을 투자신탁회계종료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 <u>-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u> <u>-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</u></p> <p>&lt;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&gt; 2017년 8월 21일 이후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</p>

		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제3부 3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최근결산일 및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</u>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-	<u>작성일 기준 업데이트</u>
제5부.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	-	<u>작성일 기준 업데이트</u>



# 변경대비표

## [간이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**NH-Amundi 1.5 배 레버리지 인덱스 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**
2. 효력발생일 : 2017 년 8 월 21 일
3. 주요정정사유;
  - 클래스 가입자격 추가(Cw Class)
  - Ce 클래스 판매 보수인하(0.755%→0.5%)
  - 선취판매수수료 차등적용('~이내 문구 추가')
  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)
 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운용현황 및 운용실적 갱신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[요약정보] 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[가입자격] Class Cw: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 [판매수수료] Class A : 납입금액의1% Class Ae : 납입금액의 0.5%  [판매보수] Class Ce : 0.755(연, %)  [기타비용, 총보수비용]	[가입자격] Class Cw: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, <u>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</u> <u>운용하는 신탁업자, 보험업법 제108조의</u> <u>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</u> [판매수수료] Class A: 납입금액의 <u>1%이내</u> Class Ae : 납입금액의 <u>0.5%이내</u>  [판매보수] Class Ce : <u>0.50</u> (연, %)  [기타비용, 총보수비용]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
[요약정보] 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. 운용전문인력 4. 투자실적추이	-	작성기준일 기준 업데이트
[요약정보] III. 1.과세	<신설>	- 이 투자신탁은 2017년 8월 21일 이후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

		<p>과세됩니다. 따라서 투자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연도에 과세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	---